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의료급여 관련 고시개정 안내(2014-203~205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03~205호(2014.11.19)

2. 보건복지부는 「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110호, 2014. 7. 16.)」, 「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, 제25조에 따른 임신·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보건복지부 고시 제119호, 2013. 7. 1.)」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92호, 2014. 10. 30.)」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 붙임 : 고시 2014-203~205호 개정내역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 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장승재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563 (2014.11.20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2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jsj@kha.or.kr